

제주지역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3.03.15)

'19.9.27.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주지역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3.15)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 1983.03.16~2004.03.15)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2)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3) 예술인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6세이하(2016.03.16이후 출생자)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신청가능주택 및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 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센터) 로만 가능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 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1. 주택단지 개요

| 단지명 | 단 지 위 치 | 건설호수 | 구조 및 난방 | 최초입주 |
|----------|--------------------------|----------|------------------------------|--------|
| 제주봉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변영로 528 | 4개동 280호 | 철근콘크리트(벽식) /개별난방(LPG) | '18.11 |
| 서귀포혁신LH3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56-13 | 2개동 200호 | 철근콘크리트(벽식) /개별난방(LPG+AIR) | '19.01 |
| 서귀포서흥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장수로 115 | 1개동 90호 | 철근콘크리트(벽식) /개별난방(LPG) | '20.09 |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공급대상

| 단지명 | 공급형 | 공급대상 | 건설호수 | 세대 당 계약면적(m ²) | | | | 대기중인 예비자수 | 모집할 예비자수 (190) | |
|----------|-----|----------|------|----------------------------|---------|-------------------|---------|-----------|----------------|----|
| | |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기타공용 | 주차장 | | | 합계 |
| 제주봉개 | 16A | 대학생·청년 | 98 | 16.80 | 7.1327 | 1.5310 | 0 | 25.4637 | 14 | 30 |
| | 26A | 주거급여수급자 | 28 | 26.53 | 11.2638 | 2.4177 | 0 | 40.2115 | 6 | 10 |
| | 36A | 신혼부부·한부모 | 126 | 36.78 | 15.6156 | 3.3519 | 0 | 55.7475 | 3 | 45 |
| 서귀포혁신LH3 | 26A | 주거급여수급자 | 20 | 26.79 | 11.3776 | 2.7246 | 7.6902 | 48.5824 | 1 | 15 |
| | 36A | 신혼부부·한부모 | 70 | 36.65 | 15.5651 | 3.7274 | 10.5206 | 66.4631 | 0 | 60 |
| | 36B | | 10 | 36.92 | 15.6797 | 3.7549 | 10.5981 | 66.9527 | | |
| 서귀포서흥 | 16A | 청년 | 12 | 16.64 | 7.2411 | 2.4996 | 0 | 23.8811 | 1 | 10 |
| | 36A | 신혼부부·한부모 | 36 | 36.72 | 15.9793 | 5.5162 | 0 | 58.2155 | 1 | 20 |

■ 임대조건

| 단지명 | 공급형 | 공급대상 | 임대조건 | | |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최대 거주 기간 |
|----------|--------------|-----------------|-----------|--------|---------|-----------|-------------------|------------|-------------------|-------------------|
| | | | 임대보증금(천원) | | | 월 임대료 (원) | | 임대보증금 (천원) | 월 임대료 (원) | |
| | | | 계 | 계약금 | 잔금 | | | | | |
| 제주봉개 | 16A | 대학생계층·청년계층(소득無) | 15,640 | 782 | 14,858 | 66,470 | (+)1,000 | 16,640 | 61,470 | 6년 |
| | | | | | | | (-)13,000 | 2,640 | 93,550 | |
| | 청년계층(소득有) | 18,400 | 920 | 17,480 | 78,200 | (+)3,000 | 21,400 | 63,200 | 6년 | |
| | | | | | | (-)15,000 | 3,400 | 109,450 | | |
| | 26A | 주거급여수급자 | 21,000 | 1,050 | 19,950 | 89,250 | (+)5,000 | 26,000 | 64,250 | 20년 |
| | | | | | | | (-)17,000 | 4,000 | 124,660 | |
| 36A | 신혼부부·한부모가족계층 | 38,800 | 1,940 | 36,860 | 164,900 | (+)19,000 | 57,800 | 69,900 | 무자녀:6년 유자녀:10년 | |
| | | | | | | (-)33,000 | 5,800 | 233,650 | | |
| 서귀포혁신LH3 | 26A | 주거급여수급자 | 21,900 | 1,100 | 20,800 | 93,070 | (+)6,000 | 27,900 | 63,070 | 20년 |
| | | | | | | | (-)18,000 | 3,900 | 130,570 | |
| | 36A,B | 신혼부부·한부모가족계층 | 40,000 | 2,000 | 38,000 | 170,000 | (+)20,000 | 60,000 | 70,000 | 무자녀:6년 유자녀:10년 |
| | | | | | | | (-)34,000 | 6,000 | 240,830 | |
| 서귀포서흥 | 16A | 청년계층(소득有) | 19,200 | 960 | 18,240 | 81,600 | (+)4,000 | 23,200 | 61,600 | 6년 |
| | | | | | | | (-)16,000 | 3,200 | 114,930 | |
| 36A | 신혼부부·한부모가족계층 | 40,400 | 2,020 | 38,380 | 171,700 | (+)20,000 | 60,400 | 71,700 | 무자녀:6년 유자녀:10년 | |
| | | | | | | (-)34,000 | 5,600 | 242,530 | | |

- 위 임대조건에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행복주택 공급 및 운영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의 경우,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개별 안내합니다. 기존 계약자 및 예비자의 해약, 계약포기 등에 따라 계약시점의 모집호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급형별 주택은 여러 타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타입별로 소수점 이하 면적 및 주택 구조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청약접수 시 공급형별로 통합 모집하며 당첨되는 주택의 동·호는 신청한 공급형별에 따라 타입별·동별·층별·향별 구분없이 추첨합니다. 예비입주자는 계약 전 반드시 당첨된 동·호 및 타입별 주택에 대한 정보를 팸플릿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36㎡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차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16형의 주택에는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책상, 가스쿠팩(2구), 소형냉장고)**이 설치되며, **입주자 요청 및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서귀포혁신LH3단지 36A형은 거실 겸 침실과 침실 1개로 설계되어 있으며 36B형은 거실과 침실 2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신청 시 주택형을 선택하실 수 없으며, 주택형은 **당첨자 발표시 추첨에 의하여 배정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7.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 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신청 불가
 -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중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3-1. 대학생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3.15)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㉞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㉞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 ①-㉞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①-㉞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
| 1인 | 4,024,661원 이하 | 120% |
| 2인 | 5,505,914원 이하 | 110% |
| 3인 | 6,718,198원 이하 | 100% |
| 4인 | 7,622,056원 이하 | 100% |
| 5인 | 8,040,492원 이하 | 100% |
| 6인 | 8,701,639원 이하 | 100% |

-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61,147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8,5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 ※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①신청자 본인 ②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③신청자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단, 신청자 본인 부모의 경우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모두 포함
-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 ※ '다음 학기'란 입주시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순위

| | |
|-----|--|
| 1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제주특별자치도)이 거주지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 2순위 |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함

3-2. 청년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3.15)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⑦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④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 |
|---|
| ①-⑦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3.03.16~2004.03.15) |
| ①-④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 3)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 ③ 해당 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
| 1인 | 4,024,661원 이하 | 120% |
| 2인 | 5,505,914원 이하 | 110% |
| 3인 | 6,718,198원 이하 | 100% |
| 4인 | 7,622,056원 이하 | 100% |
| 5인 | 8,040,492원 이하 | 100% |
| 6인 | 8,701,639원 이하 | 100% |

- * 7인 이상의 해당가구는 6인 해당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61,147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④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9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 일 것
- ⑤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 ※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경우 동일면적 대학생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 ①-④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 ①-④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 ①-④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 ※ '청년계층의 해당세대는'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①신청자 본인 ②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③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함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 순위

| | |
|-----|--------------------------------------|
| 1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제주특별자치도)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
| 2순위 |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3-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3.1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①-⑦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④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①-④와 ③~⑤를 모두 갖춘 자

| |
|---|
| ①-⑦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
| ①-④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 ①-④ (한부모가족)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
| ②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또는 만6세이하 자녀를 둔 자 |
| ③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
|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

|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
| 1인 | 4,024,661원 이하 | 120% |
| 2인 | 5,505,914원 이하 | 110% |
| 3인 | 6,718,198원 이하 | 100% |
| 4인 | 7,622,056원 이하 | 100% |
| 5인 | 8,040,492원 이하 | 100% |
| 6인 | 8,701,639원 이하 | 100% |

-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61,147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④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 일 것
-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순위

| | |
|-----|--|
| 1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제주특별자치도) 거주지이거나 소득근거지인 자 |
| 2순위 |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3-4. 주거급여수급자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3.1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자

-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3-5 계층별 경쟁 시 입주자 선정 방법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계층

- (선정방법) 순위별로 우선하여 입주자로 선정되며, 순위별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구분 | 입주자 선정 방법 |
|------|---|
| 일반공급 | 순위 → 추첨 ※ 제주봉개 16A의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의 공급물량은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

■ 주거급여수급자계층

- (선정방법)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구분 | 입주자 선정 방법 |
|------|-----------|
| 일반공급 | 추첨 |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 단지명 | 신청순위 | 신청접수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서류접수 (방문/온라인/등기우편) | 예비자 발표 |
|---------------------------|----------------------------|--|---------------------------------------|---|---|
| 제주봉개 서귀포혁신LH3 서귀포서흥 | 1순위, 2순위 동시신청 | 인터넷(PC·모바일) 접수 2023.03.29(수) 10:00 ~03.30(목) 17:00 * 인터넷 청약신청은 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현장(인터넷 대행) 접수 2023.03.29(수)~03.30(목) 10:00~17:00 | 2023.04.14(금) 17:00 이후 (LH청약센터) | 2023.04.25(화) ~ 04.27(목) 10:00 ~ 17:00 | 2023.07.21.(금) 17:00 이후 (LH청약센터 ARS 1661-7700) |

본 공고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및 현장방문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 단 장애인 고령자와 같은 정보취약계층은 현장(인터넷 대행)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신청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습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공급세대수의 일정배수 이상을 선정하며, 자격검증 후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 시 전산추첨 결과에 의해 일부 낙첨될 수 있습니다.

* 등기우편 발송 시 주소 오기입 등으로 인한 미송달이나 서류누락으로 인한 탈락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명시한 기간이 경과한 우체국 소인본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최종 예비자 발표는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청약센터에 별도 게시합니다.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안 내 사 항 | |
|------------|------------------------------------|---|
| 동의서 수집 사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 |
| 동의서 서명 대상 |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
| 서명 | 정보 제공 동의 |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
|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
| 동의서 유효기간 등 |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에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PC) 및 현장 청약 방법

○ 인터넷(PC) 신청자

* 청약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신청(임대주택)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네이버 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현장 신청자(65세 이상 고령자로서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 접수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모바일) 청약 방법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청약방법 : 모바일 앱(LH 청약센터)→임대주택→청약신청(임대주택)

· 앱 ("LH 청약센터" 검색) 설치 : 아이폰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앱다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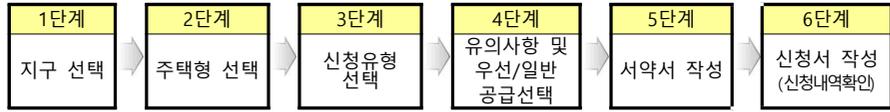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네이버 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동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으나,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시 유의사항

· 광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모바일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기타사항

· 인터넷(PC)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3.03.29(10:00)~23.03.30(17:00)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마감일 14:00 이전까지 여유 있게 신청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 인터넷(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3.03.29(10:00)~23.03.30(17:00)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취소 가능)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인터넷 대행) 접수 방법 : 접수기간 내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LH제주지사(제주시 전농로 100) 방문

· 현장(인터넷 대행) 접수는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만 가능합니다.

■ 인터넷 대행접수시 유의사항

- 방문시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요건, 당해 주택건설지역 최종 전입일, 청약저축 가입은행(해당되는 자만),도로명주소를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대행접수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 구분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 본인 직접 신청 |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신청자의 - 주민등록등본 (전부표기발급) - 주민등록초본 (전부표기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공급대상자별 추가서류 (5.신청서류참고) |
| 배우자가 대리신청 |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
| 기타 대리인이 대리신청 |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 대리발급한 신청자의 인감증명서로 신청은 가능함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 인터넷 대행접수 신청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100, LH제주지역본부 3층 대강당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3.03.15)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대학생 및 청년"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서류제출 방법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는 2023.04.14이후에 발표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소정의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23.04.25~23.04.27]내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받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서류제출 장소(등기우편발송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100 LH제주지사 공급담당자앞
- 현장 신청자 : 접수 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통 제출서류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현장접수자는 개인정보동의서, 금융정보동의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만 제출)

| 제출서류 | 비고 | 부수 |
|---------------------------------|--|----|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2] |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 제외 | 1통 |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붙임3] |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붙임4]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작성 제외 | 1통 |
| 주민등록표등본 |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 주민등록표초본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 우선공급신청자의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의 초본 (단,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 우선공급신청 시 거주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모의 초본 각 1통 (단, 부모 사망시 제출 불요) | 1통 |

| | | |
|---------|--|----|
| 가족관계증명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증명서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 1통 |
| 임신진단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통 |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 공급대상 | | 제출서류 | 발급처 | |
|--------|----------------------|---|---|----------------------------------|
|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졸업예정증명서 | 해당 대학 | |
|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 해당 학교 | |
| | 해당자만 제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 주민센터 주민센터 | |
| 청년 계층 | 청년 (만19세이상 ~ 만39세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 증명서 추가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 증명서 추가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 자격 인정명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 지방고용노동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예술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 활동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 | 해당자만 제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자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 해당 직장 | |

| | | | |
|---------|--|---|--|
| 신혼부부 계층 | 신혼부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소득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총 5년이 경과한 자 중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하는 경우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증명서(최종학력 서류로 제출)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전 별도 안내 기간에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 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 해당 학교 |
| | 예비 신혼부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양식)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공사양식) 제출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입주 전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 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동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 주민센터 |
| | 해당자만 제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경우 및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전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 국민연금공단 해당 직장 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 |
| |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 주민센터 |
| 재정약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행복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대학생이 병역의무이행 후 신청하는 경우 - 병적증명서 - 공문 등 이전 임대차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복주택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입주자가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여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으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 자녀의 기본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병무청 이전 임대사업자 주민센터 | |

6.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2023.07.21(금) 17:00예정) 및 계약안내

-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당첨자조회)
 - 당첨자 발표는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시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합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안내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되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고, 순번에 따라 입주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대기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센터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7. 무주택·소득·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
|---|
| <p>■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p> <p>■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p> <p>■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p> <p>■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p> |
|---|

| |
|---|
| <p>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p> <p>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재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p> <p>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희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p> <p>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p> <p>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p> <p>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p> |
|---|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구분 | 산정방법 |
|------|---|
| 소득 | <p>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 총 자산 | <p>부동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 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교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p>자동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 | <p>금융 자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p>기타 자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준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준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부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 자동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 항목 |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 자료 출처 |
|----------|---|---|
| 상시근로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월 평균 보수액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
| 일용근로소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 고용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증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 임업소득 |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 | |
|--------------|--|--|
| | 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 지방세정 자료 |
|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
|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
| 선박·항공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 - 지방세정 자료 |

| | | |
|-------------------------------|---|--|
| | 유사한 비행기구 | |
|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 지방세정 자료 |
|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 지방세정 자료 |
| 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 지방세정 자료 |
|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 지방세정 자료 |
|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 금융자산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금융기관 대출금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
|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
| 임대보증금 | | |
|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

8. 유의사항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 | | | | | |
|-------------------|---|------------------------|---------|------------|----|---------------|------------------------|--------------|-----|
| 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 | <p>■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fff9c4;">입주자격</th> <th style="background-color: #fff9c4;">최대 거주기간</th> </tr> </thead> <tbody> <tr> <td>대학생, 청년 계층</td> <td>6년</td> </tr> <tr> <td>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td> <td>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td> </tr> <tr> <td>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td> <td>20년</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 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p>■ 재청약 기준</p> |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 계층 | 6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 |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 | | | | | |
| | 대학생, 청년 계층 | 6년 | | | | | | | |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 | | | | | | |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산업단지 근로자에 해당하는 입주자는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등(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산업단지 근로자는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예비입주자 | <p>■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 | | | | | | | | | | | | |
| 갱신계약 등 | <p>■ 갱신계약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또는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의 경우 만 19세이상 만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만 6세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p>■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절거기 등 기준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 style="background-color: #fff9c4;">소득기준 초과 비율</th> <th colspan="2" style="background-color: #fff9c4;">할증비율</th> </tr> <tr> <th style="background-color: #fff9c4;">최초 갱신계약 시</th> <th style="background-color: #fff9c4;">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th> </tr> </thead> <tbody> <tr> <td style="background-color: #fff9c4;">10%이하</td> <td style="background-color: #fff9c4;">110%</td> <td style="background-color: #fff9c4;">120%</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fff9c4;">10%초과 30%이하</td> <td style="background-color: #fff9c4;">120%</td> <td style="background-color: #fff9c4;">130%</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fff9c4;">30%초과</td> <td style="background-color: #fff9c4;">130%</td> <td style="background-color: #fff9c4;">140%</td> </tr> </tbody> </table>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 소득기준 초과 비율 | 할증비율 | | 최초 갱신계약 시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 10%이하 | 110% | 120% | 10%초과 30%이하 | 120% | 130% | 30%초과 | 130% | 140% |
| 소득기준 초과 비율 | 할증비율 | | | | | | | | | | | | | | |
| | 최초 갱신계약 시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 | | | | | | | | | | | | |
| 10%이하 | 110% | 120% | | | | | | | | | | | | | |
| 10%초과 30%이하 | 120% | 130% | | | | | | | | | | | | | |
| 30%초과 | 130% | 140% | | | | | | | | | | | | | |
| 신청자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중복입주 금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 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 신청 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자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
| 제주공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단지는 총 540세대로 행복주택(260세대)과 행복주택(280세대)으로 구성된 혼합단지이며, 단지 전체 주차대수는 총 391대이며 지하주차장이 없습니다.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안테나는 106동, 중계장치는 105동 및 107동 옥상층에 설치하였습니다. 본 단지는 벽식구조로서 건물의 뼈대는 철근콘크리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물 노후화로 인해 세대간 방음이 취약할 수 있습니다. 본 단지에는 단지내 상가가 없습니다. 본 단지의 발코니는 비확장으로 시공됩니다. 단지 외부도로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주 후 주변현장의 공사로 인한 먼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펌플릿, 평면도, 단지배치도 등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배기구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와 단지 내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단지 외), 보안등(단지 내) 불빛,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계획, 단지조경 및 식재계획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본 단지의 일부 세대의 경우 이차사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식재, 조경시설물 등의 조경계획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활용 및 음식물 쓰레기 보관소가 인접한 일부 세대에서는 소음, 분진,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과 인접한 등의 일부세대는 해당 시설의 실외기 설치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경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서측 105, 106동 인근에 LPG가스저장소(지하)가 설치됩니다.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용부위(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는 동일타입이라도 평면에 차이가 있습니다. 세대내 주방가구, 신발장 등의 비노출 부위에는 마감재(도배, 장판)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창호(단창)가 설치되는 외벽(단열재 미설치)은 내외부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환기 등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전거보관대는 동별로 1곳씩 총 7군데 설치되며 전체 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설치 예정입니다.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층 세대는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1층 세대 전면에는 시설물 및 식재 등으로 인하여 시야가 가릴 수 있습니다.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시 일반 콘크리트 세대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세대내 목문을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주방 상부장이 꺾이는 일부 평형("ㄱ"형 또는 "c"형)은 문짝이 완전히 개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랜지후드, 욕실배기팬 조작 시 전동댐퍼 또는 전자식 댐퍼 작동음이 발생합니다. 온수분배기는 세대 싱크 하부장에 설치되고 급수급탕분배기는 욕실 천장 속에 설치되며, 급수 계량기는 신발장 하부에 설치됩니다. 가스보일러는 세대별로 설치위치가 다릅니다. 각 동의 지붕층에 설치된 무동력 흡출기로 인해 최상층 세대 등은 소음 및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 등은 겨울철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천장 및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되며, 채광 및 환기창의 설치위치는 동·호수 및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천장 및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되며, 채광 및 환기창의 설치위치는 동·호수 및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6A 세대는 가스쿡탑(2구형) 및 냉장고(소형), 책상, 불박이장이 설치됩니다. 각 동 승강기 옆에는 비상계단이 설치되며 계단 소음 등이 인접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각 세대의 배기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각 동에 설치된 승강기 및 승강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등이 설치되며 내부시설(비품류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로의 정차위치로 표기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 성능, 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일부세대는 어린이놀이터, 부대복리시설 등과 근접하여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감도, 세대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의 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주출입구는 본 지구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출입구는 지구 북서쪽에 위치합니다. 주출입구로부터 서측(105동, 106동, 107동)으로는 단지내 도로가 경사지게 됩니다. 각동 출입구는 101동~104동 전면 1층, 105동 전면 피트층 및 후면 1층, 106동 전면 1층 및 후면 1층, 107동 전면 피트층 및 후면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대 신발장 내 통합단자함 설치로 인하여 신발장 후면에 타공 부위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세대 세탁기용 콘센트의 위치에 따라 별도의 연결선이 필요할 수 있으며, 연결선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단지의 출입구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의해 신호등 등 각종 교통시설물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 | |
|----------------------|--|
| <p>서귀포혁신 LH3</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지하주차장의 차로 높이는 2.3m이며 출입구 높이는 2.1m입니다. • 본 단지는 벽식구조로서 건물의 뼈대는 철근콘크리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대 내 발코니의 경량칸막이(화재 시 비상통로) 설치 및 건물 노후화로 인해 세대간 방음이 취약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안테나 및 중계장치)를 101동 옥상층에 설치하였습니다. • 본 단지는 행복주택 200세대이며, 단지 전체 주차대수는 총 141대(아파트 [지상 84대, 지하 56대], 상가 1대)입니다. • 본 단지에는 단지 주출입구 동측으로 단지내 상가가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발코니는 비확장으로 시공됩니다. • 단지 외부도로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북측 나눔마당 동측에 한전 개폐기가 설치 예정입니다. • 입주 후 주변현장의 공사로 인한 먼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전 팸플릿, 평면도, 단지배치도 등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와 단지 내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단지 외), 보안등(단지 내) 불빛,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계획, 단지조경 및 식재계획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사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식재, 조경시설물 등의 조경계획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재활용 및 음식물 쓰레기 보관소가 인접한 일부 세대에서는 소음, 분진,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과 인접한 등의 일부세대는 해당 시설의 실외기 설치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경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위(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는 동일타입이라도 평면에 차이가 있습니다. • 세대내 주방가구, 신발장 등의 비노출 부위에는 마감재(도배, 장판)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창호(단창)가 설치되는 외벽(단열재 미설치)은 내·외부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환기 등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대는 총 3군데 설치되며 전체 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설치 예정입니다. • 1층 세대는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1층 세대 전면에는 시설물 콘 식재 등 위치에 따라 별도의 연결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이 꺾이는 일부 평형(“ㄱ”형 또는 “ㄷ”형)은 문짝이 완전히 개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렌지후드, 욕실배기팬 조작 시 전동댐퍼 또는 전자식 댐퍼 작동음이 발생합니다. • 온수분배기 및 급수급탕분배기는 세대 싱크 하부장에 설치되고 급수계량기는 신발장 하부에 설치됩니다. • 가스보일러는 세대 발코니에 설치됩니다. • 각 동의 지붕층에 설치된 무동력 흡출기로 인해 최상층 세대 등은 소음 및 냄새 등의 영향을 |
|----------------------|--|

| | |
|--------------|--|
| <p>서귀포서흥</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받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 등은 겨울철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천장 및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되며, 채광 및 환기창의 설치위치는 동·호수 및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6A 세대는 가스쿠팡(2구형) 및 냉장고(소형), 책상이 설치되며, 입주자 요청 및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단지에는 상가 및 지하주차장이 없으며, 총 주차대수는 66대입니다. • 본 단지는 벽식구조로서 건물의 뼈대는 철근콘크리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대 내 발코니의 경량칸막이(화재 시 비상통로) 설치 및 건물 노후화로 인해 세대간 방음이 취약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와 단지 내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단지 외), 보안등(단지 내) 불빛,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천장 및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팸플릿에 포함된 조감도 및 단지배치도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팸플릿 상에 적용된 마감재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시공 시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 현장여건의 변경 및 구조, 성능, 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층은 필로티 공간으로 주차장, 관리사무소로 구성되며, 1층 필로티 공간 주차장 차로의 높이는 2.7m입니다. • 단지의 서측경계는 인접부지 간 경사가 심한 구간입니다. • 15호라인 1층(필로티광장)에는 옥외쓰레기수거함이 위치하며, 해당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북측의 보행출입구는 화재 시 소방차량 출입동선으로 사용됩니다. • 세대 내 발코니 외부창호 1면의 하단은 실외기 배치를 고려하여 시스템루버창(꺽리리창)으로 시공됩니다. • 단지 남측 도로변에는 소형가스저장탱크가 위치합니다. • 발코니창호 및 주변 외벽 등은 겨울철 내·외부 온도차로 인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입주자의 예방조치가 필요합니다. • 옥실은 향후 유지관리 등을 감안하여 습식옥실로 시공됩니다. •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신발장 등 가구가 설치되는 부위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생활용자원보관소 및 오수맨홀 등 생활 필요시설물 인접 세대에서는 소음 및 냄새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 승강기는 기계실 없는 타입으로 설치되며, 승강기 관련 장비(제어반, 모터 등)로 인해 승강기 인접세대에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세탁기용 콘센트의 위치에 따라 별도의 연결선이 필요할 수 있으며, 연결선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신발장 내 통합단차함 설치로 인하여 신발장 후면에 타공 부위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 세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원활한 이동통신 사용을 위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안테나 및 중계장치)가 옥상 등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및 공용 전기요금 절감을 위하여 옥상에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본 단지는 LH가 입주자를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

기타사항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계약발생일 일반 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양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 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가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금융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계약금 대출, 만 19세 이상 대학생의 경우 전세 보증금 대출 가능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단지별 평균관리비 안내

| 단지명 | 평형(m ²) | 평균관리비(원) | 비고 |
|--------|---------------------|----------|--|
| 제주봉개 | 16 | 22,000 | 평균관리비는 전기,수도,가스 등 실사용료를 제외하여 산정하였으며, 참고 사항일 뿐, 세부내역 등 기타사항은 입주 후 해당관리소로 문의 |
| | 26 | 37,000 | |
| | 36 | 51,000 | |
| 서귀포혁신3 | 16 | 51,000 | |
| | 26 | 80,000 | |
| | 36 | 110,000 | |
| 서귀포서흥 | 36 | 95,000 | |

1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주거약자 및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 구분 | 설치항목 | 제공대상 |
|--------------|------------------|------------------------------------|
| 현관 | 마루급을 경사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 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
| | 단차 없애기 | |
| 욕실 (1개소에 한함) |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 |
| | 좌식 샤워시설 | |
| | 좌변기 안전손잡이 | |
| | 수건걸이 높이조정 | |
| | 높낮이조절 세면기 | |
| | 좌식 싱크대 | |
| 주방 | 가스밸브높이조정 | |
| | 야간센서등 | |
| 거실 | 비디오폰높이조정 | |
| | 시각경보기 | |
| 기타 | 음성유도 신호기 | 청각장애인 |
| | | 시각장애인 |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 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유의사항

-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 | |
|----------|-----------------------------------|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 당첨자 ARS | 1661-7700 |
| 인 터 넷 | www.lh.or.kr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청약센터 |
| 접수처 (약도) | |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03.15


제주지사